

안산시애향장학금설치및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727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'98. 12
제 출 자 : 안산시장

□ 개정사유

- 고등학교 「우등장학생」 선발시 학교별 학생수의 10%범위내에서 일률적으로 장학생을 선발함으로써 타학교 장학생보다 성적이 우수하지만 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불공평 사례가 발생하므로
- 관내 중학교 졸업 예정자중 관내고등학교 입학시험 성적 종합 산정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「특별우등장학생」으로 선발하여 학교별로 다소 장학금을 차등 지급하여 형평성을 유지시키고자 하며
- 영재 및 특기 장학생 선발 기준을 전국대회 입상에서 시·도이상의 대회에서 입상자로 개정하여 예·체능계 및 실업계 고교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확대지급하여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□ 주요골자

- 특별우등 장학생 선발기준 신설(안 제12조)
 - 최우수성적학생에 대한 장학생 자격 신설 및 예·체능 특기생 지급범위 확대하였음
- 장학생 정원을 대상별로 기준을 명확히 하였음 (안 제14조)
 - 장학생의 정원은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각각 80/100과 20/100으로하고 고등학생은 특별우등장학생 10%, 일반우등장학생(불우,우등,특기)은 70%, 재학생 우등장학생은 20%로 명문화 하였음
- 장학금 지급 대상자 선발기준 관련 조항을 정리하였음(안 제18조)
 - 안산시 애향장학금 지급 선발기준(별표1)신설로 조례 제18조 제2항 및 제3항 삭제

□ 개정조례 (안) : 별 첨

□ 입법예고결과 : 의견없음

○ 입법예고기간 : '98. 11. 24~12. 13(20일간)

안산시에향장학금설치및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(안)

안산시에향장학금설치및지급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2조 (장학생의 자격) ①장학생은 안산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관내 중
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중 품행이 단정한 별표 1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.

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4조 (장학생의 정원) 장학생의 정원은 별표 2, 3, 4호의 기준표 범위내에서
정한다.

제18조제2항 및 제3항을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【별표 1】

안산시 애항장학금 지급 대상 선발 기준

지급대상	선발기준	비고
(고등학교) 특별 우등 장학생	• 입학시험 성적 종합산정 결과, 고득점자 순	1 학년
(고등학교) 일반 우등 장학생	(우등 장학생) • 입학시험 성적이 10/100이내인자	1 학년
	(불우 장학생) • 가정형편이 어려운 불우학생으로 입학시험 성적이 30/100이내인자	1 학년
	(특기 장학생) • 예능, 체육기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나고 시·도 이상의 대회에서 상위 입상하여 지역의 명예를 높인자	전학년
(고등학교) 재학우등장학생	• 재학생중 전년도 학년말 계열별 성적 고득점자 우선 순 • 불우장학생중에 가정형편이 어려워 타의 지원없이 학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	2, 3학년
(대 학생) 우수대학 입학생	(우수대학 입학 장학생) • 수학능력시험 고득점자 순 • 예·체능계 우수대학 입학자	1 학년
	(불우 입학 장학생) • 가정 형편이 어려운 불우학생	1 학년

※ 안산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관내 중·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중 품행이 단정한자

【별표 2】

안산시 애향장학생 선발 총괄 정원 기준표

구 분	비 율	장학생 종류	비 율	비 고
고등학생	80%	특별 우등장학생	10%	
		일반 우등장학생	70%	우등·불우·특기 장학생으로 구분됨
		재학 우등장학생	20%	
대 학생	20%	우수대학입학 (특기) 장학생	90%	
		불우장학생	10%	

【별표 3】

1. 고등학교별 「일반우등장학생」 배정인원 산정 기준표

$$\frac{\text{각학교별학생수}}{\text{전체학생수}} \times \text{전체 「일반우등장학생」 선발 예정 인원}$$

※ 관내 학생수는 당해연도 산정시점, 경기도 교육청 통계자료에 의함.

2. 고등학교별 「재학우등장학생」 정원 산정 기준표

$$\frac{\text{학교별 「특별·일반우등장학생」 인원}}{\text{전체 「특별·일반우등장학생」 선발예정인원}} \times \text{전체 「재학우등장학생」 선발예정인원}$$

【별표 4】

고등학교별 「일반우등장학생」 정원 기준표

구 분	우등, 특기 장학생	불우장학생
정원비율	70%	30%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	개 정 안
<p>제12조 (장학생의자격)①장학생은 안산시 관내에 주소를 둔 관내학교 학생중 품행이 단정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.</p> <p>1. <u>관내 중학교 졸업생으로서 관내 고등학교에 진학하여 입학시험 성적이 각 학교별로 10/100이내인자로 한다. 다만, 가정형편이 어려운 불우학생은 입학시험 성적이 30/100이내인 자로 한다.</u></p> <p>2. <u>관내 고등학교 졸업생으로서 우수대 학교에 합격하여 지역의 명예를 빛낸 자 중에서 선발하되, 그 선발순서는 수학능력시험 고득점자 순으로한다. 다만, 가정형편이 어려운 불우학생은 예외로 한다.</u></p> <p>3. <u>영재 및 특기생 장학생은 예능·체육 기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나고 전국 대회에 입상하여 지역의 명예를 높인 자로 한다.</u></p> <p>② (생 략)</p> <p>제14조 (장학생의 정원) 장학생의 정원은 <u>고등학생과 대학생을 각각 80/100과 20/100으로하고 불우학생에 대하여는 고등학생의 정원중 30/100과 대학생 정원 중 10/100범위내에서 정한다.</u></p>	<p>제12조(장학생의 자격)①장학생은 안산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관내 중·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중 품행이 단정한 별표1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.</p> <p>1. (삭 제)</p> <p>2. (삭 제)</p> <p>3. (삭 제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4조 (장학생의 정원) 장학생의 정원은 <u>별표 2, 3, 4호의 기준표 범위내에서 정한다.</u></p>

현행	개정안
<p>제18조 (장학금의 지급)① 생략</p> <p>② <u>제12조제1항제1호에 의하여 장학생으로 선발된자가 재학중 각 학년말 계절별 성적이 3/100이내일 경우 다음 학년의 장학금을 지급한다.</u></p> <p>③ <u>제12조제1항제2호에 의하여 장학생으로 선발된자 중에서 재학중 가정형편이 어려워 타의 지원이 없이는 학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학기의 장학금을 지급한다.</u></p>	<p>제18조 (장학금의 지급)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삭제)</p> <p>③ (삭제)</p>